

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유 남 식 책임연구원
이 정 환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보고 P21/1997. 5



빈

면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에 추진되고 있는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연구기간 : 1996.1~1997.12)에 관한 용역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중의 하나이다.

벼의 조곡공매는 1992년부터 농협차액지급 수매곡에 대한 판매방법의 일환으로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3년 8월 정부의「양정개혁」에 따라 1994년부터는 정부가 수매한 곡가조절용 정부양곡도 농협중앙회가 인수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비롯한 농협과 도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조곡공매 사업은 쌀의 수급 및 가격안정, 계절진폭 확대를 통한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및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 업체간 자유경쟁에 따른 미질향상, 시가판매에 따른 정부 양특회계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1996년도의 경우는 각종 제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업체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조곡공매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해 보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조곡공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농협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1997.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제 2 장 조곡공매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4
2. 사업실시 근거 5
3. 조곡공매 제도의 개요 8

제 3 장 조곡공매 사업의 성과

1.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형성 15
2. 재정부담 경감 17
3. 민간유통의 활성화 18

제 4 장 조곡공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공매시기 및 상장물량의 무원칙적 결정 19
2. 원료곡의 지역간 이동과 부정유통..... 23
3. 공매 참여업체의 진입 제한 25
4. 입찰 상한물량 제한 27
5. 입찰 상한가격 제한 30
6. 유통출하 마진 제한 35

제 5 장 조곡공매 제도 개선방안

1. 공매의 계획성과 투명성 제고 37
2. 경쟁적 가격형성 보장 38
3. 공매가격과 수매가격의 연계 39
4. 정부미 매각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39
5. 상대거래의 확대 40

부록 1. 1996년도 조곡공매 추진결과

부록 2. 1996년도중 조곡공매 제도 변경내용

부록 3. 가공출하 및 거래단계별 비용 추정자료

부록 4. 공매곡 유통 사후관리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연도별 조곡공매 실적	5
표 2-2 도별, 공매 그룹별 대상지역	10
표 2-3 업체당 1회 공매시 연산별 입찰한도	12

제 3 장

표 3-1 단경기의 산지 쌀가격과 정부미 판매가격(6월기준)	15
표 3-2 산지별 최고 최저 낙찰가격 차이	16
표 3-3 연산별·도별 낙찰단가(1996)	16
표 3-4 전년도 수확기 산지 쌀가격 대비 차년도 시기별 가격상승율 추이 ..	17
표 3-5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 추이	18
표 3-6 양곡관리 결손액 추이	18

제 4 장

표 4-1 '95년산 공매곡의 공매회차별 간격 및 상장물량	20
표 4-2 연도별 공매곡 공매횟수 및 공매량 비교	21
표 4-3 도별 상장물량 중 타도업체가 낙찰받은 비율	23
표 4-4 도별 타도산 낙찰비율	23
표 4-5 연산별 타도업체가 낙찰받은 비율(1996년)	24
표 4-6 공매곡 낙찰물량의 산지별 구성	25
표 4-7 연도별·공매회차별 공매참여 등록업체수 및 응찰·낙찰률 ..	27
표 4-8 원료곡의 조달처별 구성 비율	28

표 4- 9	미곡종합처리장의 월평균 가공능력별 분포	29
표 4-10	'95년산 공매곡의 회차별 최고/최저 낙찰가격간 격차	31
표 4-11	월별 산지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과 공매곡 낙찰가격간 격차(1996)	32

부 록 표 목 차

부록 1

부표 1- 1 연도별·곡종별 공매실적	41
부표 1- 2 연도별·연산별 공매회수 및 공매량	42
부표 1- 3 연산별 평균 낙찰가격	43
부표 1- 4 연산별·월별 공매실적	44
부표 1- 5 연도별·소속업체별 조곡공매 참여업체 현황	45
부표 1- 6 소속업체별 공매곡 낙찰현황	45
부표 1- 7 소속업체별 공매곡 낙찰단가	46
부표 1- 8 '95년산 조곡공매 참여업체 형태별 낙찰현황	47
부표 1- 9 지역(도)별 조곡공매곡 낙찰물량	48
부표 1-10 도별 농협소속 업체의 공매곡 낙찰물량 점유비(신곡) ..	49
부표 1-11 지역(도)별 평균 낙찰가격	50
부표 1-12 지역별 타도 낙찰현황	51
부표 1-13 연산별 타도 낙찰현황	52
부표 1-14 소속업체별 타도 낙찰현황	52
부표 1-15 타도 낙찰물량의 도별 분포	53
부표 1-16 지역(도)별·품종군별 낙찰물량	54
부표 1-17 '95년산 공매곡의 품종군별·소속업체별 낙찰물량	55
부표 1-18 '95년산(신곡) 공매곡의 도별·품종군별 낙찰가격	55
부표 1-19 '95년산(신곡) 공매곡의 낙찰규모별 낙찰내역	56

그림 목 차

제 4 장

그림 4-1	'96년도 4차(3.5)~7차(5.3) 공매기간중 미가변동 추세	22
그림 4-2	1996년도 월별 미가추세	31
그림 4-3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최고 낙찰단가	33
그림 4-4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평균 낙찰단가	33
그림 4-5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평균 낙찰단가 (1군품종)	34
그림 4-6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평균 낙찰단가 (2군품종)	3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곡공매 제도는 정부가 수확기에 수매한 벼를 단경기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도정업체나 도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곡 도매업자에게 벼상태로 판매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쌀의 수급 및 가격안정, 계절진폭 확대를 통한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및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 업체간 자유경쟁에 따른 미질향상, 시가판매에 따른 정부 양특회계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농협차액지급 수매곡에 대한 판매방법의 일환으로서 199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3년「양정개혁」이후 1994년부터는 곡가조절용 정부양곡도 농협이 인수하여 공매방식으로 방출되고 있음.
- 과거 정가방출제에 의한 정부미 판매방식을 전환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게 되었음. 산지 시장가격과 정부 판매가격이 접근하게 됨으로써 미곡시장의 왜곡현상이 감소되고,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지역간 가격차가 확대되었음.
- 또한 조곡공매가 농협을 통해 차액지급 수매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종전의 정부수매 양곡관리를 위해 소요되었던 정부양곡 관리비용이 줄어들어 정부 양특회계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생산농가와 양곡유통 업자로 하여금 쌀을 보유하려는 동기부여로 민간 유통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두었음.

- 반면에 공매제도의 시행 방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 예를 들어 공매시기와 상장물량이 정형화되어 있지 못함에 따른 관련업계의 공매예측 투명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음.
- 특히, 1996년도에 실시된 조곡공매의 경우 공매하반기부터 입찰 상한물량 제한·상한가격 설정 등으로 공매과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공매곡 배분의 불균형으로 원료확보를 위한 타도낙찰이 불가피하여 공매곡의 산지간 또는 신·구곡간의 혼합 내지는 산지둔갑 유통의 여지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도 중에 공매참여 업체의 제한·유통출하 마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각종 참여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매참여 업체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1992년 이후 조곡공매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공매의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자체적인 성과분석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공매제도의 상의 문제점이나 공매사업 추진과정 및 공매이후 유통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향후 공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매제도는 과연 당초 목표했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지난해 공매실시 과정에서 취해진 일련의 긴급 규제조치는 과연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이었는지, 또한 앞으로 공매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양곡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데에 본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조곡공매 사업의 실시목적, 법적근기 등 공매사업의 개요와 「양정개혁」 내용 중에서 공매 관련사항을 살펴 보고, 공매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분석함.
- 조곡공매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1996년도에 추진된 공매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공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 그리고 공매곡의 유통관리 측면에서의 비합리적인 점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곡공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함.

제 2 장

조곡공매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실시목적

- 산지에서 원료곡 상태로 판매함으로써 민간유통기능 활성화에 기여
-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미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정부미유통에 시장원리 도입
- 도정업체간 자유경쟁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품질향상 유도
- 수매곡의 정가판매에 대한 농민불만 완화
- 곡가조절용 양곡의 지속적인 판매를 통한 곡가조절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정가매출이 아닌 시가판매와 조기판매로 정부 양특결손 축소

○ 실시시기

- 농협의 조곡공매 사업은 1991년산 농협차액지급 수매곡에 대한 판매방법의 일환으로서 199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 1993년 8월 20일 정부의 『양정개혁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1994년도부터는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조곡)도 농협이 인수하여 공매방식을 통하여 방출되고 있음.

표 2-1 연도별 조곡공매 실적

단위 : 천석

구분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농협수매곡	1,000	2,500	3,500	4,500	3,723
정부인수곡	-	-	5,182	4,914	6,417
계	1,000	2,500	8,682	9,414	10,140

2. 사업실시 근거

- 조곡공매는 「양정개혁」의 결과로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조곡공매에 관한 별도의 시행규칙은 없음.

가. 양곡관리법 제24조(업무대행)

-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 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 및 가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나. 양정개혁 방안

- 정부는 국내외의 양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이전까지 직접시장개입 방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양곡관리 제도를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양정개혁방안」을 마련함.
- 양정개혁의 기본방향은 미곡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민간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과거 양곡이 부족했던 시대에 도입된 수매·방출제도를 시장원리에 맞

는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쌀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양정개혁은

-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며 산지쌀값을 지지하기 위해 정부양곡 방출방식을 정가방출에서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고,
- 농협을 통한 차액지급 수매제를 확대·적용하고,
- 양곡관리 회계방식을 개편하여 양곡사업 재정운영을 건전화시키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함.

- 정부양곡의 공매제도는 이 같은 양정개혁의 핵심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됨.

다. 양정개혁 방안의 주요내용

1)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

- 정부가 전체 물가안정 차원에서 쌀값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온 결과 쌀값변동이 연중 2~3% 수준에서 머물게 됨으로써 양곡상인들이 수확기에 쌀을 수집·보관하는데 따른 비용수준에도 못미치게 됨. 이러한 결과, 수확기에 민간 양곡상들은 쌀매입을 기피하고,

- 농가는 정부수매 이외에는 수확기 쌀 판로가 제약되어 연말 농촌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에 대한 수매물량 확대요구가 커지게 되었음.

- 따라서, 민간 양곡상들의 수확기 벼 구매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 수확기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이듬해 단정기에 10%, 수확기에 3% 범위내에서 쌀값의 등락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하며,

- 제도도입 초년도인 '94년에는 단정기 7%, 수확기 5% 수준에서 쌀값상승을 허용하기로 함.

2) 산지 쌀값지지를 위한 정부미 방출방식의 전환

- 1993년까지 몇년 동안 추곡 수매가격을 물가상승을 이상으로 인상하고 정부미는 낮은 가격으로 방출함에 따라 수매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수매가와 산지쌀값 격차:

(‘90.11) 19,575원/80kg → (‘93.11) 31,653원/80kg
- 소득증가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계비 중에서 쌀 구입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는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쌀을 선호하고 있으나 양질미생산 및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기호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 따라서, 그동안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방출해 오던 정부미 방출방식을 전환하여 미질별, 계절별로 시장수급 원리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협으로 하여금 벼 상태로 공매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정부의 쌀 시장개입 최소화를 기하고자 함.
 - 농협이 정부수매곡을 외상으로 인수하여 일정 계절진폭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매 실시

3) 농협을 통한 차액지급 수매제 도입

-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농민들의 수확기 정부수매량 확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수매량을 확대해야 하나 정부 입장에서 볼때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수매량을 늘릴 경우 민간시장 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협을 통한 차액지급 수매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음.
 - 농협이 수매하는 물량은 정부수매가로 사들이되, 수매가와 시가와 차액은 정부가 농협에 보전

4) 양곡관리 회계방식의 개편

- 그동안 정부양곡의 판매결손 증대와 추곡수매량 확대에 따른 부족 자금 조달을 고리의 양곡증권 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양곡관리기금 결손이 계속 증가하였음.
 - '93년말 기준 양곡관리기금 결손누계액 : 8조 7,535억원
 - 양곡증권 발행잔액 :
 - ('80) 2,600억원 → ('92) 50,513억원 → ('93) 62,005억원
 - '93년말 결손누계액의 42.5%가 양곡증권 이자 등 금융비용
 - '93년의 경우 양곡증권 이자상환을 위해 연간 5,767억원(1일 16억원) 지출
- 따라서, '94년부터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양곡증권 신규발행을 전면 중단하며, 양곡관리사업은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운영하고 부족되는 자금은 전액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함.

5) 차등가격 수매제 실시

- 양질미생산 촉진을 위해 '93년산 추곡수매부터 산지와 품종에 따른 미질별 구분수매를 우선 실시하고, '96년 이후 미질별 차등가격 수매제를 도입키로 함.

3. 조곡공매 제도의 개요

□ 공매계획 수립 통보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매해 차액지급 수매곡 및 정부보유곡 인수물량에 대한 공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기관(농림부·농산물검사소) 및 관련협회(곡물협회·양곡가공협회)와 계통사무소(농협 도지역본부)에 통보함.

- 농협 도지역본부는 중앙회(양곡부)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공매계획 물량에 대하여 공매대상 물량에 대한 보관창고별 상장 우선순위 결정
- 보관창고별 상장 우선순위 결정시 보관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창고 등 보관여건이 취약한 창고를 우선적으로 상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창고는 보관창고주 소유자별로 형평성있게 안분상장하여 보관료 수입에 대한 불만 최소화

□ 공매대상 곡종 및 물량

- 농협차액지급 수매곡 : 농협수매곡 중 산물수매분을 제외한 전량
- 정부수매 보유곡 : 정부양곡 수급계획에 따라 농협이 인수받은 물량

□ 공매추진 기관 및 실시지역

- 공매주관: 농협중앙회(양곡부)
- 공매실시: 농협중앙회 8개 도지역본부(제주·부산·인천 지역본부 제외)
 -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본부

□ 입찰방법

- 일반 경쟁입찰(희망물량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단가입찰)
 - '96년도 9차공매(6.14) 이후부터 상한가격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 공매곡 상장방법

- 견본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응찰자의 현물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창고에서 현물확인이 가능함.
- 연산별(신곡·구곡), 품종군별(1군·2군)로 구분상장

- 국립농산물검사소는 전체 상장물량 중 일정량을 채취하여 분석한 상세한 정보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
- 공매를 실시하는 해당농협 도지역본부의 관내실정을 감안하여 몇 개의 그룹(지대 또는 지역)으로 구분 상장하고 있음.
- 1996년도의 경우 21개 그룹으로 구분

표 2-2 도별, 공매그룹별 대상지역

도별	1군 품종		그룹명	대 상 지 역
	기준미	비기준미		
경기	추정	일품	A	연천, 포천, 양평, 양주, 가평
			B	여주, 이천
			C	용인, 안성, 평택, 송탄, 화성, 시흥, 안산
			D	김포, 강화
			E	고양, 파주
			F	기타(도서지역)
			G	도정시설 미보유 도서지역
강원	오대	진미	A	춘천, 홍천, 횡성, 원주, 화천
			B	철원
			C	명주
충북	추정	일품	A	전지역 동일그룹
충남	동진	일품	A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당진, 아산, 천안
			B	금산,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보령, 청양
			C	'95년도 지역관내의 수해지역
전북	동진	계화	A(평야)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익산
			B(산간)	완주, 임실, 남원, 순창, 기타지역
전남	동진	계화	A(동부)	담양, 곡성, 구례, 광양, 여천, 순천,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장성
			B(서부)	해남, 영암, 무안, 나주, 함평, 영광, 완주, 진도, 신안, 광주
경북	동진	일품	A(평야)	경주, 선산, 김천, 달성, 의성, 안동, 경산, 고령, 구미, 상주, 예천
			B(산간)	군위, 청송, 영양, 영덕, 포항, 영천, 청도, 성주, 칠곡, 문경, 영주, 봉화, 울진, 기타지역
경남	화성	동진	A	전지역 동일그룹

□ 공매참가 대상자 범위

- 농협 : 미곡도정시설 보유 농협
 - RPC, 도정공장, 지대미시설 보유 회원농협
 - '96년 9차 공매시(6.14)부터 지대미시설 보유농협은 배제
- 민간 : 미곡도정시설을 보유하고 양곡도매업 신고를 필한 자
 - RPC, 임도정공장(대규모 상미공장 포함)
 - 단, 군관수용 등 정부양곡 가공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는 제외

□ 공매참여 대상업체 지정

- 공매에 참여하는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공매참여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매실시 이전에 참여신청을 받아 공매가 실시되는 지역별로 농협중앙회 해당 도지역본부에서 지정함.

□ 공매참여 지역범위

- 지역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2개도 이상 복수道)으로 공매참여 가능
 - '96년 9차공매(6.14)부터 1개도에서만 공매참여 허용

□ 업체당 1회 공매참여시 최고 입찰한도

- 공매참여 업체당 1회 공매시 입찰한도가 '96년 5차공매(4.3)까지는 무제한이었음.
- 1996년 6차공매(4.23)부터 미곡수급 여건과 공매과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매시기·연산·입찰참여 업체의 도정능력 규모(대·소규모)에 따라 최고 입찰한도를 조정하였음(표 2-3 및 부록 2. 참조).

표 2-3 업체당 1회 공매시 연산별 입찰한도

- 12차공매시(9.6) 적용예 -

단위 : 40kg/조곡가마

규 모'	연산	최고한도(전국)	최저한도(품종군별) ²	입찰단위
대규모	95	10,000가마 이하	3,000가마 이상	1,000가마
	94~90	3,000가마 이하	1,000가마 이상	
소규모	95	3,000가마 이하	3,000가마 이상	1,000가마
	94~90	3,000가마 이하	1,000가마 이상	

1. 양곡가공업 등록상 1일 8시간 기준 정미 생산능력에 따라 구분.
(대규모 : 15톤 이상인 업체, 소규모 : 15톤 미만인 업체)
2. 품종군별 입찰서 1매당 최저한도.

□ 공매입찰 공고

- 농협중앙회(양곡부)가 입찰일 10일전(긴급시 5일전)에 도별 공매 곡 상장내용(연산별, 공매물량 등)을 중앙일간지 중에서 선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관련협회 및 계통사무소에 통보함.
- 농협 도지역본부는 중앙회의 공고내용에 따라 자도내에 배정된 공매 상장물량에 대해 시·군별, 보관 창고별 상장내역을 공고함과 동시에 입찰등록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유인배부
- 품종군별(1군·2군) 구분공매 실시지침에 따라 품종군별로 상장하여 입찰자가 품종군별로 응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립농산물검사소는 전체 상장물량 중 일정량을 채취하여 분석한 상세한 정보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

□ 공매곡의 예정가격 결정

- 농협중앙회(양곡부)에서 정한 예정가격 결정지침에 의거 도지역본부장이 결정함.
- 예정가격 산출방법은 중앙회의 통보내용(산지쌀값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에 따라 산지미가(정곡 80kg)를 조사기간 중에 조사

하여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조곡가격(40kg)으로 환산한 다음, 이에 중앙회에서 통보한 지침(최고·최저율 적용범위)에 의거 도지역본부장이 결정

- 예정가격 산출방법(예시)

① 평균 산지미가(조곡 40kg) 산출

- 조사·산출된 평균 산지미가(정곡 80kg) ÷ 2(조곡 40kg 환산) × 정곡·조곡 환산율(72%)

② 예정가격 산출

- ①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 산지미가(조곡 40kg) × 적용율

□ 낙찰자 결정

- '입찰상한가제' 적용이전인 '96년 5월(8차공매)까지는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상장물량에 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낙찰자의 순위는 최고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였음.
- '입찰상한가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96년 6월(9차공매)부터는 예정가격(하한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에서 상한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부터 순차로 상장물량에 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상한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경우는 입찰무효
 - 낙찰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동일한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간주
 - 최종순위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계하여 상장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량은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낙찰물량의 배정

- 최고순위 낙찰자로부터 낙찰수량에 달할 때까지 상장물량 보관창고를 배정하되 창고내 상장량이 낙찰물량(품종군별)보다 많을 때

는 동일창고에서 배정하고, 낙찰물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낙찰물량에 달할 때까지 다른 창고물량을 배정함.

□ 공매곡 유통에 관한 사후관리

- 조곡공매에 참여한 전업체를 대상으로 공매곡의 재고량, 유통출하 마진 및 조곡전매 여부 등에 대해 농검(시·군 출장소)이 수시로 조사하여 재고과다 보유업체, 유통출하마진 과다업체 및 조곡전매 혐의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회수에 따라 공매참여를 제한 또는 배제시킴으로써 공매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있음(부록 2. 참조).

□ 공매입찰 공고내용

- 연산별 도별 상장물량
- 입찰방법 : 상한가격 제한 경쟁입찰(희망물량에 대한 서면 단가입찰)
- 공매참여 업체당 1회 연산별 입찰한도 수량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입찰등록 기간 및 입찰일시
- 입찰참가 대상자 지역범위 : 전국(1개 도에서만 공매참여 허용)
- 입찰참가 대상자의 범위
- 공매참여자격 제한 배제 기준
 - 위반회수별 공매참여 제한 또는 배제(부록 2. 참조)
-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서류
- 입찰유의사항 위반시 입찰무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기일(입찰일로부터 4일 이내)
 - 대금 납부기일(계약일로부터 6일 이내)
 - 낙찰물량의 인수도기일(대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매곡 관리대장 및 전기사용 대장의 비치작성, 위반업체 단속 실시 등

제 3 장

조곡공매 사업의 성과

1.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형성

- 정부양곡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음.

가. 산지 시장가격과 정부 판매가격의 접근

- 정부양곡의 판매가격이 수급실세에 따라 결정되므로 산지가격 수준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정부양곡에 의한 미곡시장의 왜곡현상이 감소하게 되었음.

표 3-1 단경기의 산지 쌀가격과 정부미 판매가격(6월 기준)

단위 : 원/정곡80kg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정부미 판매가격(A)	90,000	92,000	96,600	96,600	108,137	116,508	126,835
산지 쌀가격(B)	96,134	95,635	98,903	100,361	108,221	111,559	137,569
격 차(B-A)	6,134	3,635	2,303	3,761	84	△4,949	10,734

* 정부미 판매가격이란 정부양곡이 양곡 유통업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1993년까지는 전년산 정부미의 방출가격, 1994년 이후는 공매곡의 평균 낙찰가격임.

나.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가격차 확대

- 산지와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경쟁입찰 과정에 반영된 결과 산지별·품종별로 낙찰가격의 차이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 평가가 쌀 가격에 현시적으로 나타나게 됨.

표 3-2 산지별 최고·최저 낙찰가격 차이

단위 : 원/조곡40kg

년 도	최고가 낙찰		최저가 낙찰		차 이 (A-B)
	산 지	낙찰가격(A)	산 지	낙찰가격(B)	
1994	경기 이천	41,120	충남 대전	32,186	8,934
1995	경기 이천	42,627	경남 진주	35,410	7,217
1996	경기 김포	52,990	경기 웅진	37,005	15,985

- 산지·품종 뿐만 아니라 정부미의 연산에 따른 가격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남.

- '93년산은 냉해로 인한 품질저하가 발생되어 '92년산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음.

표 3-3 연산별·도별 낙찰단가(1996)

단위 : 원/조곡40kg

연산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995	48,836	42,612	45,689	44,599	44,544	45,539	43,795	43,292	44,891
1994	-	-	42,147	41,941	40,049	40,698	39,145	39,939	40,541
1993	-	-	36,460	-	36,920	-	26,572	36,296	31,358
1992	-	-	-	-	35,681	34,520	34,605	-	35,438
1991	-	-	34,012	33,992	34,012	33,984	-	-	34,008
1990	-	-	-	30,603	33,342	-	-	32,518	33,245
1989	-	-	29,009	28,507	29,893	30,993	30,189	30,250	29,844

다. 계절진폭의 확대

- 경쟁입찰에 따라 정부양곡의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의 인위적 조정이 감소하여 보관료·이자 등의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쌀가격의 계절진폭이 확대됨.

표 3-4 전년도 수확기 산지 쌀가격 대비 차년도 시기별 가격상승율 추이

단위 : 원/80kg

년 도	전년도 수확기 (11/12월) 산 지 가 격	전년도 수확기 대비 가격상승율(%)			
		3~4월	5~6월	7~8월	9~10월
1996	125.621	4.4	9.4	8.3	7.4
1995	105.126	3.4	5.5	10.1	10.4
1994	101.474	2.7	5.4	6.0	3.9
1993	98.065	2.1	2.6	2.3	2.3
1992	95.491	1.0	3.4	3.6	3.5
1991	92.096	3.3	3.7	3.9	4.4

2. 재정부담 경감

- 정부미의 판매가 공매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시가를 훨씬 하회하던 정부미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게 되어, 정부수매의 매매차익 손실이 현저히 감소되었음<표 3-5>.
- 매매차익 손실이 감소하면서 이중가격제가 사실상 종료되어, 199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던 양곡관리 재정의 적자규모가 축소됨<표 3-6>.

표 3-5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 추이

단위 : 원/정곡80kg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매가격(A)	119,210	126,360	132,680	132,680	132,680	137,990
판매가격(B)	92,000	96,600	96,600	108,137	116,508	126,835
격 차(B-A)	-27,210	-29,760	-36,080	-24,543	-16,172	-11,155

표 3-6 양곡관리 결손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매출손실	-6,511	-8,648	-10,799	-10,310	-8,712	-5,164
이 자	-3,586	-4,437	-5,546	-6,631	-8,964	-3,605
기 타	-463	-727	-2,044	-2,173	-2,261	-581
계	-10,560	-13,812	-18,389	-19,114	-19,937	-9,350

3. 민간유통의 활성화

- 민간 도정업체의 공매참여로 산지쌀값에 상응한 경쟁가격이 형성되고 쌀값의 계절진폭 확대로 농가 및 민간 양곡유통업자의 쌀보유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정부수매량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산지 쌀가격의 하락이 방지됨.
- 품질에 따라 낙찰가격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됨.

제 4 장

조곡공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공매시기 및 상장물량의 무원칙적 결정

- 현행 조곡공매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공매시기, 상장물량(연산별·품종군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중 공매계획이 사전에 수립·발표되지 않고, 공매가 실시되기 7~10일전에 당회차 공매곡의 입찰공고가 발표되고 있음.
- 1996년도 조곡공매는 모두 12회('95년산의 경우) 실시되었는데 공매주기는 2차(2.6)와 3차(2.13)간의 7일간격이 가장 짧았고, 11차(8.2)와 12차(9.6)의 간격이 35일로 가장 길었으며, 공매회차간의 평균주기는 20.8일 정도이었음.
- 경기도지역의 경우 낙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경기미가 전국의 쌀값을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단경기인 상반기중에 4회(5차, 6차, 8차, 9차)에 걸쳐 공매가 실시되지 않아 이 지역 업체들은 원료곡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타지역산(타도) 쌀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음.

표 4-1 '95년산 공매곡의 공매회차별 간격 및 상장물량

공매회차	공매일자	전회차와의 간격(일)	상장물량 (천석)
1차	1. 19	-	1,000
2차	2. 6	18	1,000
3차	2. 13	7	1,199
4차	3. 5	21	1,000
5차	4. 3	29	800
6차	4. 23	20	600
7차	5. 3	10	1,000
8차	5. 23	20	700
9차	6. 14	22	700
10차	7. 8	24	700
11차	8. 2	25	700
12차	9. 6	35	600
평균	-	21	833

○ 공매회차간에 일정한 주기가 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공매가 실시되므로 공매참여 업체로서는 다음 공매가 어떤 조건에서, 언제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신곡의 공매횟수 및 공매량도 연도별로 차이가 심함.

- 공매참여 업체는 거래처에 제품(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매가 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업체당 최고한도 물량까지 낙찰받으려고 함으로써 공매가격을 수급실세 이상으로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농가와의 계약재배(일반매입 포함) 물량이 충분하거나 지난 공매시에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업체는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거래처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거래처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표 4-2 연도별 공매곡 공매횟수 및 공매량 비교

단위 : 회, 천석/4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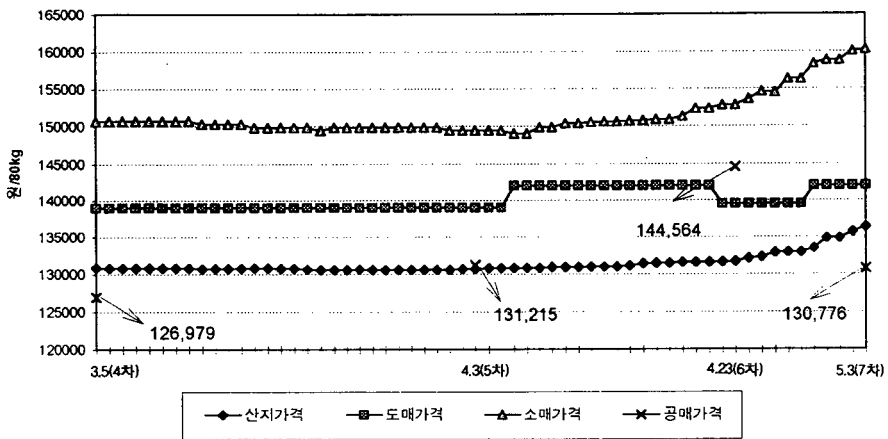
구분 연산	1996		1995		1994	
	공매횟수	공매량	공매횟수	공매량	공매횟수	공매량
1995	12	8,698	-	-	-	-
1994	3	769	15	8,431	-	-
1993	5	68	7	527	20	8,058
1992	2	72	5	321	10	624
1991	1	15	-	-	-	-
1990	2	149	-	-	-	-
1989	5	369	2	135	-	-
계	30	10,140	29	9,414	30	8,682

- 상장물량도 일정수준의 기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변동되어 공매참여 업체들로 하여금 차기 공매시기의 상장물량에 대한 불확실감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상장물량의 불확실성이 공매를 과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격불안정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96년의 경우 4차 공매시(3.5)까지는 평균 15일 간격으로 100~120만석을 상장하여 공매가 이루어 졌으나, 5차 공매시(4.3)에는 29일의 간격을 두고 상장물량은 80만석으로 감축하였고, 6차 공매(4.23)는 다시 20일 간격을 둔후 60만석으로 상장물량을 감축시킨 결과 5차 공매시의 평균 낙찰가격(95년산)이 4차 공매시보다 3.3% 상승하였고 6차 공매시에는 5차 공매시보다 10.2%나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그 결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이 5차 공매 직후에는 약 상승, 6차 공매 이후부터는 급상승 추세를 나타내었음.

- 이처럼 공매과열 현상이 일어나자 6차공매가 있는지 10일만에 7차 공매(5.3)를 실시하면서 상장물량을 100만석 수준으로 늘린 결과 공매곡 낙찰가격이 6차공매시 평균 낙찰가격보다 9.5%나 하락하여 산지가격을 크게 하회하였음.

그림 4-1 '96년도 4차(3.5)~7차(5.3) 공매기간중 미가변동 추세



주 : 산지·도매가격은 농림부 조사가격, 도매가격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경락가격 (충청미 기준)이며, 공매가격은 공매곡의 회차별 전국평균 낙찰가격임.

- 사전예시없이 공매시기나 상장물량 등이 정부임의대로 결정되었고,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도 중에 업체당 1회공매시 최고 입찰한도, 제약조건, 입찰참가대상의 지역범위, 입찰상한가 설정에 따른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이 변경되었으며, 공매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공매참여 제한기준을 설정하는 등 공매제도가 일관성없이 추진됨으로써 정부양곡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려는 공매제도의 본래취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곡수급 조절 및 미가안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 원료곡의 지역간 이동과 부정유통

- 현행 조곡공매 제도상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이 전국의 어느 공매에도 참여하여 공매곡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96년의 경우 타도의 업체가 낙찰받은 물량이 전체 상장량의 18.3%에 이름.
- 따라서 타 지역산 쌀을 공매받은 후 자기 지역산 쌀과 혼합하거나 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부당하게 품질마진을 취할 개연성이 있음.

표 4-3 도별 상장물량 중 타도업체가 낙찰받은 비율

단위 : %

산지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995	7.6	1.4	35.3	6.4	22.7	6.1	2.6	24.1	12.3
1996	16.0	14.0	31.3	7.5	39.1	5.4	3.3	31.8	18.3

표 4-4 도별 타도산 낙찰 비율

단위 : %

지역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996	18.9	74.8	9.5	19.4	4.9	21.0	36.6	4.7	18.3

○ 지역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경기·충청 등 양질미 생산 지역의 공매참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타 지역산이나 구곡 또는 2군품종의 공매곡을 낙찰받아 양질미나 신곡 또는 1군 품종과 적당한 비율로 혼합가공한 후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고품질쌀로 둔갑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반면에 양질미 생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의 공매참여 업체들도 양질미 지역의 공매곡을 낙찰받아 적당히 혼합하여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구곡(고미)의 경우 산지와 재고물량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기 도내의 재고가 부족하여 타도로부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타도낙찰이 불가피한 실정임.

표 4-5 연산별 타도업체가 낙찰받은 비율(1996년)

단위 : 천석/조곡 40kg

구 분	구 곡							95년산	합계
	89년산	90년산	91년산	92년산	93년산	94년산	계		
공매물량(A)	369	149	15	72	68	769	1.442	8.698	10.140
타도낙찰(B)	156	92	11	33	20	225	537	1.322	1.859
B/A(%)	42.3	61.7	73.3	45.8	29.4	29.3	37.2	15.2	18.3

○ 뿐만 아니라 공매지역(도)별로 몇개 그룹(2~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매곡을 상장한 후 상한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물량을 인수할 창고를 정하도록 하는 현행 공매제도하에서는 자기 지역(시·군)의 쌀을 낙찰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따라서 자기 지역산 벼를 낙찰받지 못하였거나 낙찰물량이 부족하였을 경우 다른 지역(타도·타시군)의 벼를 낙찰받거나 매입하여 자기 지역산 쌀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불가피함.

표 4-6 공매곡 낙찰물량의 산지별 구성

단위 : 가마/조곡40kg, %

업체	해당 시·군 쌀		해당 도내 타 시·군 쌀		타 지역 (도) 쌀		총 낙찰물량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경북 S농협 RPC	74,966	40.1	77,008	41.2	35,000	18.7	186,974	100.0
충북 D민간 RPC	26,076	55.5	10,924	23.2	10,000	21.3	47,000	100.0
전남 D농협 RPC	17,535	10.6	67,465	40.9	80,000	48.5	165,000	100.0

* 현지조사 결과

- 그러나 공매곡의 산지간 혼합·둔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참여 지역을 동일 시·군 또는 시·도 단위로 제한할 경우 공매참여 업체간에 가격담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료곡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업체간 조곡전매(되팔기) 행위 등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공매 참여업체의 진입 제한

- 농협의 지대미업체(정곡매입후 소포장 판매업체)에 대한 조곡공매 참여배제 조치가 취해진 '96년도 9차공매(6.14) 이전까지는 미곡도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양곡도매업을 신고한 자는 누구라도 조곡공매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95년도의 쌀 생산량 감소와 쌀 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말미암아 1996년도의 공매참여 등록업체수는 전년대비 53개소(4.8%)가 늘어났음.

- 연도별 공매참여 등록업체수 추이를 보면 '94년의 653개소에서

‘95년에는 1,096개소, ‘96년에는 1,149개소(9차공매 이후는 127개 농협 지대미업체가 제외된 1,022개소)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매참여에 대한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었던 7차공매까지는 모든 등록업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공매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참여 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체 및 지대미 업체에 대한 공매참여 제한조치가 취해진 8차공매 이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는 810~915개 업체로 감소하였음.
- ‘96년도 공매회차별 응찰업체수 추이를 보면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었던 7차공매까지는 660~830개 업체에 달하였으나, 공매참여 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일제점검(5.15~5.16)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된 339개 업체가 공매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8차공매에서는 528업체로 급격히 줄어 들었고, 지대미업체의 공매참여 배제조치가 취해진 9차에는 452업체로 더욱 감소하였다가 위반업체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10차공매 이후부터는 다시 600업체 수준으로 늘어났음(부록 4 참조).
- ‘96년도 공매회차별 응찰률(공매참여 자격업체수에 대한 응찰업체수 비율)을 보면 위반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지대미 업체의 참여배제 등의 제한조치가 취해진 9차공매(55.0%)를 제외하고는 60~73% 수준임.
 - 공매참여 자격을 가진 업체수의 과다여부가 공매의 과다경쟁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매참여 자격업체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시책은 공개입찰 방식에 따른 공매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만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짐.
- 한편, 낙찰률(응찰업체수에 대한 낙찰업체수 비율)이 5차공매와 6차공매시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응찰업체수는 증가된 반면에 4차공매까지는 100~120만석 수준이었던 상장물량이 5차와 6차공매에서는 60~80만석으로 급격히 줄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7 연도별·공매회차별 공매참여 등록업체수 및 응찰·낙찰률

단위 : 개소, %

연도· 회차별	등록 업체수 (A)	참여제한 업체수 (B)	참여자격 업체수 (C) <A-B>	응찰		낙찰		제한조치내역
				업체수 (D)	응찰률 (D/C)	업체수 (E)	낙찰률 (E/D)	
1995	1,096	-	1,096	798	72.8	623	78.1	
1996		-						
1차	1,149	-	1,149	834	72.6	632	75.8	
2차	1,149	-	1,149	788	68.6	688	87.3	
3차	1,149	-	1,149	659	57.4	615	93.3	
4차	1,149	-	1,149	696	60.6	688	98.9	
5차	1,149	-	1,149	778	67.7	500	64.3	
6차	1,149	-	1,149	792	68.9	348	43.9	○ 입찰한도 제한(30,000가마)
7차	1,149	-	1,149	776	67.5	601	77.4	○ " (20,000가마), 신규업체 제한
8차	1,149	339	810	528	65.2	432	81.8	○ 위반업체 제한
9차	1,149	327(10)	822	452	55.0	349	77.2	○ 상한가설정, 지대미업체 배제
10차	1,149	294(12)	845	493	58.3	297	60.2	
11차	1,149	231(13)	896	591	66.0	283	47.9	○ 입찰한도 제한(15,000가마)
12차	1,149	199(10)	915	586	64.0	349	59.6	○ " (10,000가마)
평균 (계)	1,149	278(45)	1,028	664	64.6	482	72.6	

* '95년도(94년산) 공매는 15회 실시되었고 9차 이후의 참여제한 업체수에는 지대미 업체(127개소)가 포함되었으며, ()내는 위반업소 중 공매참여 배제조치를 받은 업소로 참여제한 업체수에 포함되어 있고 차기공매 참여자격 업체수에는 누적차감 되었음.

4. 입찰 상한물량 제한

- 1996년 12차 공매시(9.6)부터 공매참여 업체당 1회 입찰 상한물량을 '95년산(신곡)에 한해 1일 가공능력 15톤 이상인 대규모 업체는 10,000가마/조곡40kg 이하, 1일 가공능력 15톤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3,000가마/조곡 40kg 이하로 제한하였음.

- 대부분의 공매참여 업체가 당해년도말 내지는 이듬해 1~2월까지의 농가 직접매입 물량과 차액수매곡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3~4월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공매곡에 의존하고 있음.
-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북 S농협 RPC의 경우 총 취급물량(판매량)의 67.1%를 공매곡에 의존하고 있었고, 경기 K민간 RPC의 경우는 8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6년 1월 이후에는 100% 공매곡에 의존하였음.
- 조곡공매가 현행과 달리 회차간 30일 간격을 두고 매월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업체당 1회 입찰 상한물량을 현재와 같이 10,000가마/조곡40kg(1일 가공능력 15톤 이상인 대규모업체 기준)로 제한한다면 소규모 임도정공장을 제외한 RPC(농협, 민간업체)의 경우 공매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입찰 상한물량까지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표 4-8 원료곡의 조달처별 구성 비율

단위 : 가마/조곡40kg, %

연월별	경북 S농협 RPC					경기 K민간 RPC				
	자체매입곡		공매곡		계	자체매입곡		공매곡		계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95년 10	30,744	100.0	-	-	30,744	9,736	100.0	-	-	9,736
11	20,496	100.0	-	-	20,496	4,922	100.0	-	-	4,922
12	17,080	100.0	-	-	17,080	8,059	100.0	-	-	8,059
96년 1	7,013	12.3	50,000	87.7	57,013	-	-	15,000	100.0	15,000
2	5,845	14.3	35,000	85.7	40,845	-	-	2,000	100.0	2,000
3	3,507	26.0	10,000	74.0	13,507	-	-	6,000	100.0	6,000
4	1,870	5.9	30,000	94.1	31,870	-	-	16,000	100.0	16,000
5	1,636	7.6	20,000	92.4	21,636	-	-	12,000	100.0	12,000
6	1,169	100.0	-	-	1,169	-	-	6,000	100.0	6,000
7	1,403	7.6	16,974	92.4	18,377	-	-	10,000	100.0	10,000
8	701	4.5	15,000	95.5	15,701	-	-	15,000	100.0	15,000
9	234	2.3	10,000	97.7	10,234	-	-	10,000	100.0	10,000
계	91,698	32.9	186,974	67.1	278,672	22,717	19.8	92,000	80.2	114,717

* 현지조사 결과

RPC가 월평균 가공능력(조곡40kg가마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임.

- '96년말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215개소 중에서 월평균 가공능력이 최저수준인 업체는 민간 RPC로서 14,170가마임.

-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차기 공매시기 및 상장물량이 불확실한 여건하에서 입찰 상한물량마저 제한한다는 것은 공매참여 업체로 하여금 공매경쟁을 더욱 과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도정능력이 비교적 크며, 제품(쌀)의 판매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도정업체가 낙찰받은 공매곡을 전매(웃돈지불)하여 거래처수요에 충당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판매원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음.

표 4-9 미곡종합처리장의 월평균 가공능력별 분포*

단위 : 가마/조곡40kg

구분 \ 능력별		15,000 미만	15,000~ 20,000	20,000~ 25,000	25,000~ 30,000	30,000~ 35,000	35,000~ 40,000	40,000~ 50,000	50,000 이상	계
농협 업체	업체수 (개소)	-	32	56	8	50	-	-	-	146
	비율 (%)	-	21.9	38.4	5.5	34.2	-	-	-	100.0
민간 업체	업체수 (개소)	1	6	7	24	13	3	10	5	69
	비율 (%)	1.4	8.7	10.1	34.8	18.8	4.4	14.5	7.3	100.0
합계	업체수 (개소)	1	38	63	32	63	3	10	5	215
	비율 (%)	0.5	17.7	29.3	14.9	29.3	1.4	4.6	2.3	100.0

* RPC업체별 연간 가공능력(백미,톤)을 조곡(40kg가마)으로 환산하였고 농협업체는 '91~'96년 사업체, 민간업체는 '93~'96년 사업체임.

5. 입찰 상한가격 제한

- 공매참여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기준이 종전에는 공개입찰 원칙에 따라서 최고가격 입찰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장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 1996년도 9차공매시(6.14)부터 공매회차별·그룹별로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상한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중 에서 상장물량에 달할 때까지 최고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입찰 상한가격제가 도입 적용되기 시작한 9차공매 이후부터는 최고 낙찰가격과 최저 낙찰가격(예정가격)의 폭이 가마당 7,500~10,900 원에 불과하였음.
 - 이는 정가판매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쌀 수급상황에 따라 공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공매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 뿐만 아니라 상한가격과 예정가격이 입찰참여 업체에게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입찰결과 상한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였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였을 경우에는 유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정보가 부족한 업체로서는 상한가격과 예정가격 사이에서 입찰가격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공매곡을 낙찰받기가 일종의 '요행게임'과 같이 되어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행운경쟁이 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음.
- 입찰 상한가격제의 도입운동은 공매곡의 낙찰가격과 시장가격간에 이 중가격이 형성되어 중간상인으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손해임.
 - 입찰 상한가격제를 실시한 '96년 6월 이후 공매곡 낙찰가격과 산지가격과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9월에는 정곡 80kg 가마당 15,507원에 달하였고, 소비자 가격과의 격차는 28,950원이었음.

표 4-10 '95년산 공매곡의 회차별 최고/최저 낙찰가격간 격차

단위 : 원/40kg가마

회차별	최고 낙찰가격 (A)	최저 낙찰가격 (B)	격 차 (A-B)
1차	56,300	41,800	14,500
2차	57,100	40,695	16,405
3차	60,100	39,601	20,499
4차	63,199	39,201	23,998
5차	50,000	38,639	11,361
6차	53,750	42,510	11,240
7차	53,650	37,001	16,649
8차	52,000	37,707	14,293
9차	47,600	38,805	8,795
10차	49,750	38,880	10,870
11차	46,170	37,500	8,670
12차	44,480	37,002	7,478
연 중	63,199	37,001	26,198

그림 4-2 1996년도 월별 미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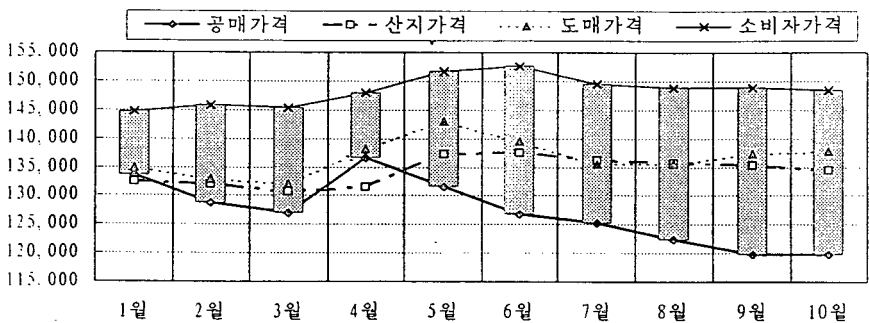


표 4-11 월별 산지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과 공매곡 낙찰가격간 격차(1996)

단위 : 원/정곡 80kg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매가격 (A)	133,479	128,718	126,979	136,629	131,624	126,835	125,374	122,354	119,910	119,910
		산지가격 (B)	132,574	131,975	130,745	131,621	137,270	137,569	136,209	135,838	135,417	134,376
		도매가격 (C)	134,993	134,583	132,215	138,243	142,935	139,448	135,460	135,478	137,288	137,740
		소비자 가격(D)	144,790	145,730	145,290	147,970	151,830	152,560	149,500	148,800	148,860	148,520
격 차	B-A	△905	3,257	3,766	△5,008	5,646	10,734	10,835	13,484	15,507	14,466	
	C-B	2,419	2,608	1,470	6,622	5,665	1,879	△749	△360	1,871	3,364	
	D-C	9,797	11,147	13,075	9,727	8,895	13,112	14,040	13,322	11,572	10,780	
	D-A	11,311	17,012	18,311	11,341	20,206	25,725	24,126	26,446	28,950	28,610	

자료 : 공매가격은 전국평균 낙찰가격, 산지가격은 농림부 유통통계 조사가격, 도매가격은 한국은행 조사가격, 소비자가격은 통계청 조사가격임.

그림 4-3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최고 낙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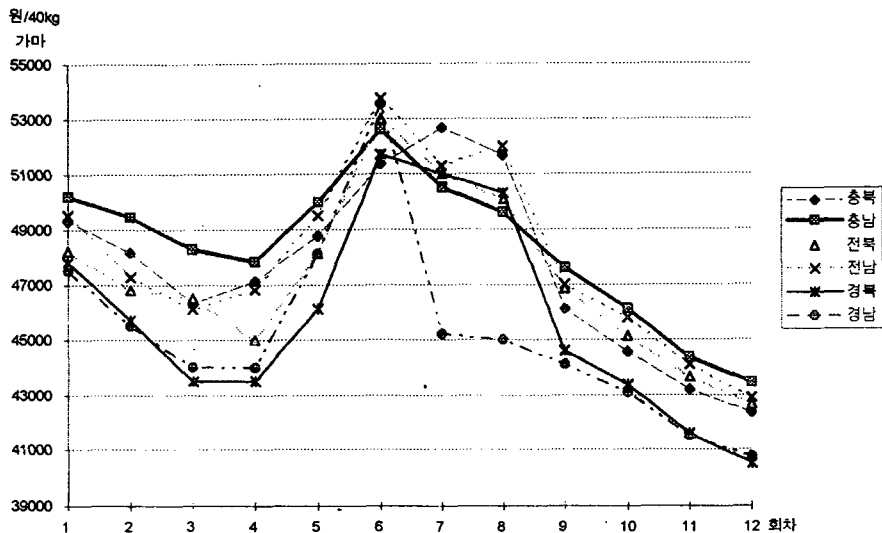


그림 4-4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평균 낙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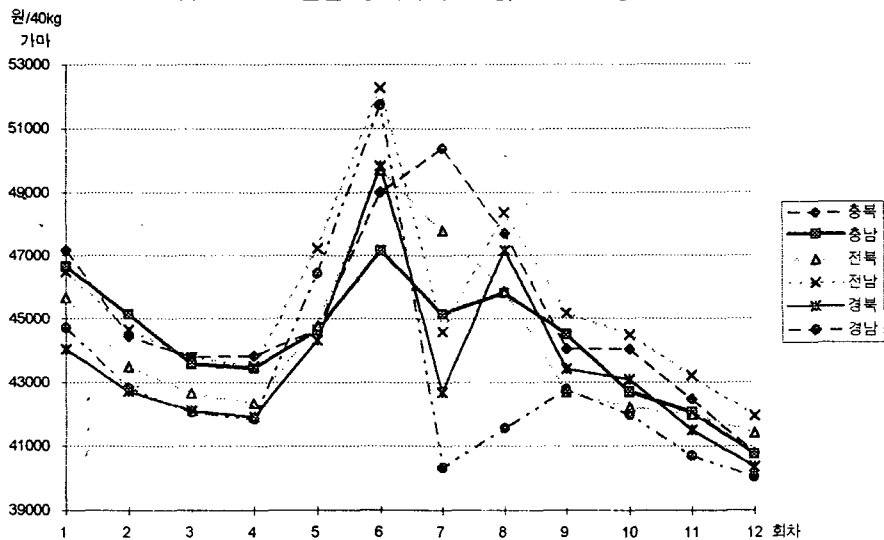


그림 4-5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평균 낙찰단가(1군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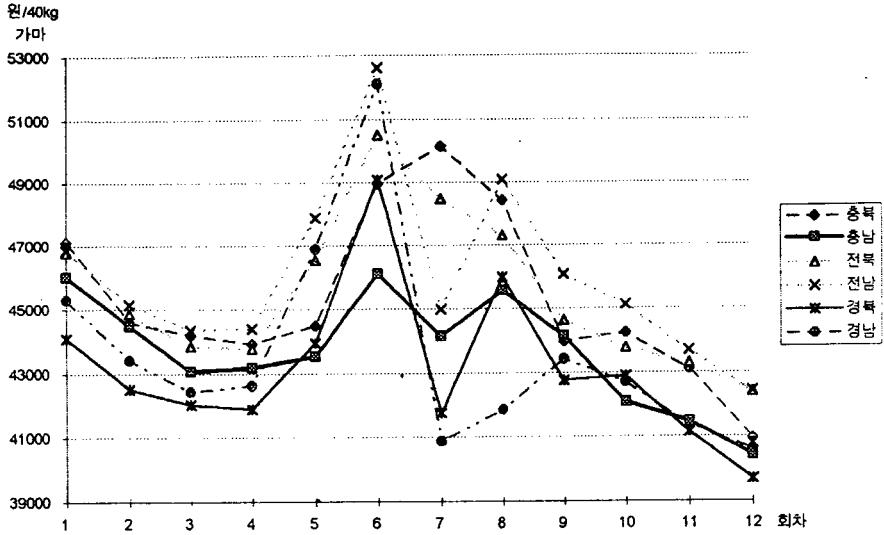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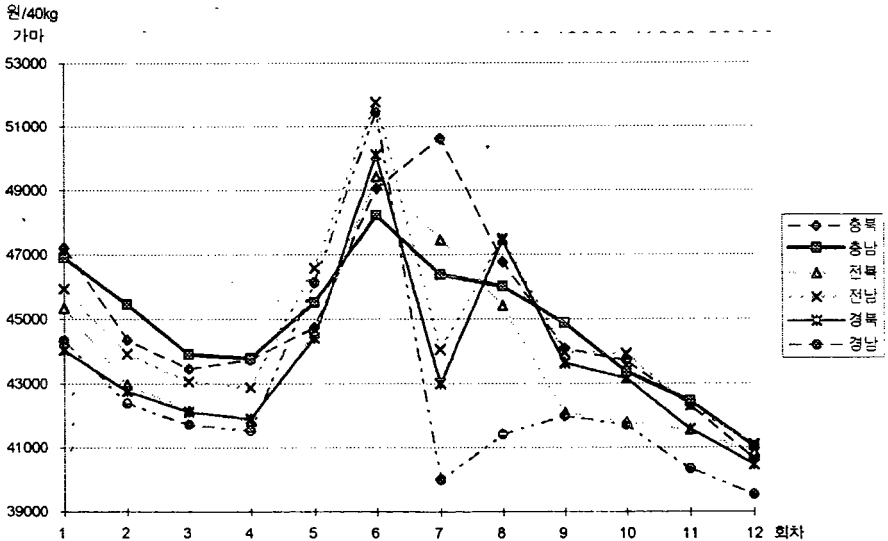


그림 4-6 '95년산 공매곡의 도별, 회차별 평균 낙찰단가(2군품종)



6. 유통출하 마진 제한

- 1996년도 8차공매(5.23)부터 낙찰시기에 관계없이 '95년산 공매곡을 중심으로 공매곡의 유통출하 마진 상한선을 설정(정곡 80kg 가마당 10,000원)함으로써 공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로 인한 업체의 출하마진 과다를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음.
 - 공매곡의 유통출하 마진 상한선 설정기준은 조곡40kg 기준 공매곡 낙찰가격을 기초로 매입제비용(수송임·조작비), 포장자재비, 가공제비용, 인건비, 운영금리 및 판매제비용 등을 더하여 출하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적정 출하마진율(출하원가의 0.6%)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임.
 - 이 같은 기준은 원료곡의 품질(도정수율)이나 업체의 시설운영 여건, 제품판매 여건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 소요되고 있는 유통출하 비용과는 차이가 있어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업체별 낙찰가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유통출하 마진율 0.6%를 모든 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결과가 됨.
 - 공매곡의 유통출하 마진 상한선 설정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작성한 '공매곡 가공출하 및 거래단계별 비용추정' 자료(부록 3. 참조)를 보면, 조곡 낙찰가격의 정곡환산시 도정수율을 일률적으로 72%를 적용하였고, 가공출하 비용 산출시 일부 회원조합의 자료를 참고로 추정된 것이므로 각 업체의 사정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 '95년산 공매곡의 평균 낙찰가격(조곡40kg) 격차
- 지역(도)별 : 경기도 48,836원, 강원도 42,612원(6,224원 차이)
 - 소속업체별 : 농협 45,360원, 민간 44,534원(826원 차이)
 - 품 종 군 별 : 1군 45,563원, 2군 44,419원(1,144원 차이)
 - 공매회차별 : 6차 50,031원, 12차 41,399원(8,632원 차이)

- 공매곡 유통출하 마진에 대한 지도단속의 철저를 기하려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기장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적용받지 않는 개인(민간)업체인 경우는 출하마진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자체수매곡 등과 혼합하여 제품(쌀)을 생산하는 경우 공매곡만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의 마진을 제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제 5 장

조곡공매 제도 개선방안

1. 공매의 계획성과 투명성 제고

-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중 공매계획을 연도초에 수립하여 사전 예시함으로써 공매참여 업체가 스스로 시설여건(저장·도정), 판매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매참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연중 총 공매예상량과 공매주기를 예시함으로써 공매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매과열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상장물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함.
 - 단, 조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예를 들면, 입찰 상한가격(5.2.절 참조)에 낙찰된 수량이 총 상장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추가공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조정 능력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임.

2. 경쟁적 가격형성 보장

- 공매참여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참여 자격업체를 지정하되 공매참여 자격업체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정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업체 등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참여자격을 부여함.
 - 한 업체가 동시에 두 지역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제한을 폐지함.
- 현재의 최고입찰 한도는 철폐하되, 한 업체가 전체 상장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하여 물량독점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함.
 - 예를 들면, 한 업체가 공매구립별 상장량의 30% 이상은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낙찰가격이 시장의 수급실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격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경쟁입찰은 그 속성상 가격진폭이 수급실세 이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회차 공매시의 평균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상·하한 폭을 설정함.
 - 예를 들면, 전회차 평균 낙찰가격의 $\pm 5\%$ 를 입찰 상·하한 가격으로 설정함.(단, 매년 제1회차 공매시에는 전년도 동기 평균 낙찰가격의 $\pm 10\%$ 를 입찰 상·하한 폭으로 설정)
- 유통마진은 시장의 경쟁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제한이나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공매가격과 수매가격의 연계

- 공매가격은 시장의 수급실세와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이 결과가 생산자 가격에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없음.
 -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의 이득 혹은 손실이 생산자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정부 또는 농협중앙회에 귀속되는 결과가 됨.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자가 이의 분배를 요청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됨.
 -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른 가격차이가 생산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므로 양질미 생산유인이 없음. 결국 정부수매 제도가 품질이 떨어지는 저비용 다수확계통의 쌀생산을 자극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미 판매가격과 수매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수매가격을 설정하여야 하나, 수매가 판매보다 앞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수매가격을 판매가격에 연동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전년도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금년도 수급실세를 반영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판매가 완료된 후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 함.

4. 정부미 매각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 현행 공매제도는 정부가 정부양곡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하고, 농협중앙회가 이를 공매방식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농

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양곡의 매각가격 결정에 시장원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현재 정부미 매각가격은 공매가격과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지만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미 매각가격 결정산식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수매와 판매는 각 지역농협이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고,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비축에 필요한 물량만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상대거래의 확대

- 입찰에 의하여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각 업체가 희망하는 산지구획 혹은 품종의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더우기 입찰 가격 순서에 따라 인수할 산지(창고)가 결정되므로 자გი지역 쌀은 물론 업체가 희망하는 산지의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따라서 업체가 브랜드별로 산지와 품종을 계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고, 쌀의 지역간 이동이 업체의 희망과 관계없이 증가하게 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미의 일부만을 공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일본의 자주유통미 판매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면에 정부미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이 자체적으로 수매한 쌀도 필요에 따라 공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쌀판매 경로를 확대함.

부 록 1

1996년도 조곡공매 추진결과

1. 공매추진 현황

가. 총 팔

- 1996년도 정부의 조곡공매 추진결과를 보면 조곡공매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총 10,232천석(51,160천가마/40kg조곡)을 인수하여, 이중 10,140천석(50,700천가마)을 판매(공매낙찰 물량)하였음.

- 총 판매금액 : 22,139억원, 재고량 : 92천석(460천가마)

부표 1-1 연도별·곡종별 공매실적

단위 : 천석

구분 \ 연도	1996년도	1995년도	1994년도	증 감	
	(A)	(B)	(C)	A-B	A-C
신 곡	8,698	8,431	8,058	267	640
구 곡	1,442	983	624	459	818
계	10,140	9,414	8,682	726	1,458

○ 1996년도 조곡공매는 '89~'95년산 벼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매기간은 1995년 12월 12일부터 1996년 9월 6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공매회수는 총 30회로서 공매주기는 월평균 3회 정도이었음.

- 공매회수를 연도별로 살펴 보면 총 회수는 비슷한 수준이나, 신곡에 대한 공매회수는 해마다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부표 1-2 연도별·연산별 공매회수 및 공매량

단위 : 천석

구분 연산	1996년도			1995년도			1994년도		
	회수	공매량	재고량	회수	공매량	재고량	회수	공매량	재고량
1995	12	8,698	92	-	-	-	-	-	-
1994	3	769	-	15	8,431	69	-	-	-
1993	5	68	-	7	527	69	20	8,058	912
1992	2	72	-	5	321	72	10	624	576
1991	1	15	-	-	-	-	-	-	-
1990	2	149	-	-	-	-	-	-	-
1989	5	369	-	2	135	-	-	-	-
계	30	10,140	92	29	9,414	210	30	8,682	1,488

나. 연산별 평균 낙찰가격 현황

○ '96년도 공매곡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구곡의 경우 연도가 경과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금년에는 정부양곡 재고량이 줄어 들고 신곡의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났음.

- 전년대비 신곡가격 상승율을 보면 1995년의 경우 2,485원/40kg(6.8% 상승)이었으나, 1996년의 경우는 5,687원/40kg(14.5% 상승)이었음.

부표 1-3 연산별 평균 낙찰가격

연도 \ 구분		평균 낙찰가격(원)		전년대비(조곡기준)		비 고
		조곡/40kg	정곡/80kg	증감액(원)	증감율(%)	
96년	95년산	44,891	129,607	5,687	14.5	신곡
	94년산	40,541	117,524	1,337	3.4	전년 신곡대비
	93년산	31,358	92,015	△1,131	△3.5	
	92년산	35,438	103,349	8,754	32.8	
	91년산	34,008	99,377	-	-	
	90년산	33,245	97,257	-	-	
	89년산	29,844	87,810	7,603	34.2	
95년	94년산	39,204	113,069	2,485	6.8	신곡
	93년산	32,489	94,416	△4,230	△11.5	전년 신곡대비
	92년산	26,684	78,291	△2,695	△9.2	
	89년산	22,241	65,950	-	-	
94년	93년산	36,719	106,166	-	-	신곡
	92년산	29,379	85,777	-	-	

다. 연산별·월별 공매현황

- '95년 12월 이후 산지미가의 불안정으로 인해 '96년도 총 공매물량의 82% 정도를 상반기('95. 12~'96. 6)중에 집중적으로 공매를 실시하였고, 7월 이후 공매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95. 12~'96. 6 기간중 공매량 :
8,305천석('95년 동기대비 2,184천석 증가)
- '96. 7~'96. 9 기간중 공매량 :
1,835천석('95년 동기대비 1,458천석 감소)

부표 1-4 연산별·월별 공매실적

단위 : 천석

구 분		전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96년	당월	443	1,269	1,806	783	1,562	1,762	680	610	621	604	-
	누계	443	1,712	3,518	4,301	5,863	7,625	8,305	8,915	9,536	10,140	10,140
전년 대비	당월	443	548	370	△268	177	631	283	△716	△736	△6	-
	누계	443	991	1,361	1,093	1,270	1,901	2,184	1,468	732	726	726
95년	당월	-	721	1,436	1,051	1,385	1,131	397	1,326	1,357	610	-
	누계	-	721	2,157	3,208	4,593	5,724	6,121	7,447	8,804	9,414	9,414
94년	당월	-	647	1,144	709	1,016	1,393	1,530	775	1,142	251	75
	누계	-	647	1,791	2,500	3,516	4,909	6,439	7,214	8,356	8,607	8,682

2. 공매결과 분석

가. 공매 참여업체 현황

- 조곡공매 등록업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이는 정부가 정책사업 추진으로 신설되는 농협 및 민간주체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임도정공장(가공협회 소속)의 공매참여 업체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함.
 - 1995년의 조곡공매 등록업체수는 1,096개 업체로 전년대비 443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1996년은 1,149개 업체로 '95년에 비해 53개 업체가 증가하였음.
- 실제로 1996년 조곡공매에 참여한 업체수는 전년대비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년부터 연합형태로 설치된 RPC에 대한

구매참여 배제 및 제7차 구매시('96. 5.3)부터 신규업체에 대한 구매참여 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부표 1-5 연도별·소속업체별 조곡구매 참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 소속		농협	곡물협회	가공협회	기타	계
96년	등록업체수	373	131	561	84	1,149
	참여업체수	335	126	438	78	977
95년	등록업체수	418	130	485	63	1,096
	참여업체수	387	125	406	63	981
94년	참여업체수	310	107	217	19	653

나. 소속업체별 구매곡 낙찰실적

- '96년도 조곡구매 낙찰물량을 소속업체별로 보면 농협이 4,126천석으로 전체 구매물량의 40.7%, 곡물협회·가공협회 소속인 민간업체가 6,014천석으로 전체 구매량의 59.3%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협 : '94년 40.5% ⇒ '95년 38.9% ⇒ '96년 40.7%

- 민간 : '94년 59.5% ⇒ '95년 61.1% ⇒ '96년 59.3%

부표 1-6 소속업체별 구매곡 낙찰현황

단위 : 천석

구 분		농 협	곡물협회	가공협회	기 타	계
96년	낙찰물량	4,126	2,473	3,016	525	10,140
	비중(%)	40.7	24.4	29.7	5.2	100.0
95년	낙찰물량	3,657	2,755	2,687	315	9,414
	비중(%)	38.9	29.3	28.5	3.3	100.0
94년	낙찰물량	3,514	2,424	2,744	-	8,682
	비중(%)	40.5	27.9	31.6	-	100.0

다. 소속업체별 공매곡 낙찰단가

- '96년도 전국평균 공매곡 낙찰단가('95년산)는 44,891원/조곡40kg으로 지난해보다 14.5%(5,687원)가 상승하였으며, 농협과 민간업체의 평균 낙찰단가의 차이는 전년대비 449원/조곡40kg 증가되었음.

- 농협 대 민간업체 낙찰단가 차이 :

· '94년 957원/조곡40kg ⇒ '95년 377원/조곡40kg ⇒ '96년 826원/조곡40kg

- 농협과 민간업체와의 평균 낙찰단가 차이가 지난해에 비해 큰 이유는 경기지역 농협이 경기지역산 원료곡 확보를 위해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데 기인됨.

부표 1-7 소속업체별 공매곡 낙찰단가

단위 : 원/조곡40kg

구 분	농 협	민 간 업 체				전국평균
		곡물협회	가공협회	기 타	평 균	
96년(95년산)	45,360	44,183	44,882	44,156	44,534	44,891
95년(94년산)	39,427	38,859	39,200	39,386	39,050	39,204
96/95	증 감 액	5,933	5,324	5,682	4,770	5,687
	상승율(%)	15.1	13.7	14.5	12.1	14.1
94년(93년산)	37,271	36,301	36,325	-	36,314	36,719

라. 소속업체별·형태별 공매곡 낙찰현황

- '96년도 조곡공매 참여업체 형태별 공매곡 낙찰물량 비중을 보면 도정공장 57.9%, RPC(농협·민간) 36.2%, 지대미시설(농협) 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RPC가 늘어남에 따라 RPC의 점유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RPC 점유비 : '95년 33.1% ⇒ '96년 36.2%

- 업체 형태별 낙찰단가(신·구곡 포함)는 지대미시설(농협), RPC, 도정공장의 순으로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대미시설 업체의 낙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 업체가 낙찰가격이 높게 형성된 '96년 상반기에만 공매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 공매곡 낙찰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제9차 공매('96.6.14) 이후부터는 농협의 지대미시설 업체에 대해 공매참여 배제조치를 취함.

▶ 업체형태별 평균 낙찰단가(조곡40kg) :

- 지대미시설 46,944원, RPC 45,101원, 도정공장 44,548원

▶ 소속업체별 평균 낙찰단가(조곡40kg) :

- 농협 45,360원, 민간 44,534원

부표 1-8 '95년산 조곡공매 참여업체 형태별 낙찰현황

단위 : 천석, 원/조곡40kg

구 분		낙 찰 업체수	낙 찰 물 량		낙 찰 단 가	
			수 량	점유비(%)	평균단가	전국대비
농협	RPC	121	2,403	27.6	45,188	297
	도정공장	87	840	9.7	44,879	△12
	지 대 미	127	516	5.9	46,945	2,054
	소 계	335	3,759	43.2	45,360	469
곡물협회	RPC	39	666	7.6	44,723	△168
	도정공장	87	1,311	15.1	43,909	△981
	소 계	126	1,977	22.7	44,183	△708
가공협회	RPC	2	52	0.6	46,395	1,504
	도정공장	436	2,446	28.1	44,848	△43
	소 계	438	2,498	28.7	44,882	△9
기타	RPC	1	27	0.3	44,291	△600
	도정공장	77	437	5.0	44,147	△744
	소 계	78	464	5.3	44,156	△735
계	RPC	163	3,148	36.2	45,101	210
	도정공장	687	5,034	57.9	44,548	△343
	지 대 미	127	516	5.9	46,944	2,053
	합 계	977	8,698	100.0	44,891	-

마. 지역(도)별 공매곡 낙찰현황

- 1996년도 조곡 공매곡의 총 낙찰물량(신·구곡 합계)은 10,140천석으로서 전년대비 726천석이 증가(7.7%)하였으며,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112천석(2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 2,065천석(20.4%), 충남 1,541천석(15.2%), 경북 1,487천석(14.7%)의 순으로서 전체 낙찰물량 중에서 이들 4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1%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475천석이나 감소(38.0%)하였고 충북이 21천석이 감소(3.3%)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의 낙찰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경기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입찰가격 상승추세로 말미암아 금년도 상반기중(4월~6월) 모두 네 번(5차, 6차, 8차, 9차)이나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던데 기인함.
 - ▶ 전북, 전남, 충남, 경북 4개도의 낙찰물량 비중 :
 - '94년 67.3% ⇒ '95년 67.1% ⇒ '96년 71.1%
 - ▶ 경기도의 낙찰물량 추이 :
 - '94년 1,102천석 ⇒ '95년 1,249천석 ⇒ '96년 774천석

부표 1-9 지역(도)별 조곡공매곡 낙찰물량

단위 : 천석,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996 (비율,%)	774 (7.6)	286 (2.8)	611 (6.0)	1,541 (15.2)	2,112 (20.8)	2,065 (20.4)	1,487 (14.7)	1,264 (12.5)	10,140 (100.0)
1995 (비율,%)	1,249 (13.3)	249 (2.6)	632 (6.7)	1,512 (16.1)	1,614 (17.1)	1,720 (18.3)	1,468 (15.6)	970 (10.2)	9,414 (100.0)
96/95 (증감율%)	△475 (△38.0)	37 (14.9)	△21 (△3.3)	29 (1.9)	498 (30.9)	345 (20.1)	19 (1.3)	294 (30.3)	726 (7.7)
1994 (비율,%)	1,102 (12.7)	246 (2.8)	519 (6.0)	1,502 (17.3)	1,474 (17.0)	1,761 (20.3)	1,104 (12.7)	974 (11.2)	8,682 (100.0)

바. 지역(도)별 농협의 공매곡 낙찰물량 점유비중(신곡)

- 1996년도 조곡공매곡 낙찰물량(95년산) 중에서 농협소속 업체가 낙찰받은 물량비중은 43.2%로서 전년대비 2.3%가 늘어났는데, 이를 지역(도)별로 살펴 보면 비교적 민간업체 참여수가 적은 강원도가 71.0%로 가장 높은 반면에 규모가 큰 민간 도정업체수가 많은 경북의 경우는 25.1%인 것으로 나타났음.
- 1996년도 전체 낙찰물량중 농협소속 업체에서 낙찰받은 공매곡 낙찰물량 비중의 전년대비 증감추이를 도별로 살펴 보면 강원도가 13.1%, 충남이 11.2%, 전남이 7.1% 각각 늘어난 반면에 경기도는 11.8%, 전북이 6.9% 줄어 들었음.
- ▶ '96년도 농협소속 업체의 낙찰물량 비중 :
 - 강원 71.0% ⇒ 충북 57.5% ⇒ 경기 49.6% ⇒ 충남 46.6%
- ▶ '95년 대비 '96년도 점유비 증가추이 :
 - 강원 13.1% ⇒ 충남 11.2% ⇒ 전남 7.1% ⇒ 충북 4.4%

부표 1-10 도별 농협소속 업체의 공매곡 낙찰물량 점유비(신곡)

단위 : %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1996	49.6	71.0	57.5	46.6	43.2	42.0	25.1	33.2	43.2
1995	61.4	57.9	53.1	35.4	50.1	34.9	25.0	30.9	40.9
96/95	△11.8	13.1	4.4	11.2	△6.9	7.1	0.1	2.3	2.3
1994	60.8	54.3	53.1	37.4	51.5	36.4	28.1	28.8	41.8

사. 지역(도)별 공매곡 낙찰단가

- 1996년도 조곡 공매곡의 전국평균 낙찰단가는 40kg 가마당 44,891 원으로 1995년의 39,204원보다 14.5% 상승하였으며, 이를 도별로

살펴 보면 경기도가 48,836원으로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42,612원으로 가장 낮았음.

- 전국평균 낙찰단가(44,891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형성된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95년산 정부수매가격(47,820원/40kg, 1등기준)보다도 1,016원이 높은 수준이었음.

○ 낙찰단가가 가장 높게 형성된 지역(경기)과 가장 낮게 형성된 지역(강원)과의 가격차는 40kg 가마당 6,224원으로서 '95년의 경우 동일지역간 가격차 2,792원보다도 3,432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경기지역의 공매곡 상장물량이 타지역에 비해 감소됨에 따라 공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전년대비 낙찰가격 상승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19.3%로 가장 높았으며, 여타 지역은 11~16%의 상승율을 나타내었음.

▶ 전년대비 낙찰가격 상승추이 :

- 96/95 :

〈최고〉 경기 7,906원(19.3%), 〈최저〉 강원 4,474원(11.7%)

- 95/94 :

〈최고〉 경북 3,974원(11.0%), 〈최저〉 경기 1,896원(4.7%)

부표 1-11 지역(도)별 평균 낙찰가격

단위 : 원/조곡40kg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전 국
1996년		48,836	42,612	45,689	44,599	44,544	45,539	43,795	43,292	44,891
1995년		40,930	38,138	39,729	39,366	38,752	39,243	38,521	38,226	39,204
96/95	상승액	7,906	4,474	5,960	5,233	5,792	6,296	5,274	5,066	5,687
	비율(%)	119.3	111.7	115.0	113.3	114.9	116.0	113.7	113.3	114.5
1994년		39,034	36,007	36,749	37,481	36,879	36,720	34,547	35,166	36,719

아. 공매곡의 타도낙찰 현황

- 1996년도 조곡공매곡의 타도 낙찰물량은 1,859천석으로서 전체 낙찰물량의 18.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12.3%보다 6.0% 포인트가 증가된 것임.
- 이와 같이 올해의 타도 낙찰물량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금년도에 경기·강원지역의 공매곡 상장물량이 불균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구곡재고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타도 낙찰현황을 지역(도)별로 보면 자도내의 공매참여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원료곡이 부족한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많았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낙찰된 공매곡 2,112천석 중 타도업체에서 낙찰받은 물량이 825천석(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지역의 1,264천석중에서 402천석(31.8%), 충북지역이 611천석중에서 191천석(31.3%)의 순으로 나타났음.

부표 1-12 지역별 타도 낙찰현황

단위 : 천석/조곡 40kg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전 국
96년	공매물량(A)	774	286	611	1,542	2,112	2,065	1,487	1,264	10,140
	타도낙찰(B)	124	40	191	116	825	112	49	402	1,859
	B/A(%)	16.0	14.0	31.3	7.5	39.1	5.4	3.3	31.8	18.3
95년	공매물량(A)	1,249	249	632	1,512	1,614	1,720	1,468	970	9,414
	타도낙찰(B)	96	3	223	97	366	105	38	233	1,160
	B/A(%)	7.6	1.4	35.3	6.4	22.7	6.1	2.6	24.1	12.3

- '96년도 조곡 공매곡의 타도 낙찰물량 비율을 연산별로 보면 신곡(95년산)이 15.2%인데 반하여 구곡(89~94년산)은 37.2%에 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구곡의 타도 낙찰비율이 신곡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구곡 재고물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부표 1-13 연산별 타도 낙찰현황

단위 : 천석/조곡 40kg

구 분	구 곡							95년산	합 계
	89년산	90년산	91년산	92년산	93년산	94년산	계		
공매물량(A)	369	149	15	72	68	769	1,442	8,698	10,140
타도낙찰(B)	156	92	11	33	20	225	537	1,322	1,859
B/A(%)	42.3	61.7	73.3	45.8	29.4	29.3	37.2	15.2	18.3

- '96년도 조곡 공매곡에 대한 타도 낙찰비율을 소속 업체별로 보면 농협관련 업체(RPC·도정공장·지대미시설)가 9.4%인데 비해 민간업체(곡물협회 및 가공협회 소속회원)는 24.5%로서 농협보다 민간업체가 타도에서 공매곡을 더 많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표 1-14 소속 업체별 타도 낙찰현황

단위 : 천석/조곡 40kg

구 분	농 협	민 간				합 계
		곡물협회	가공협회	기 타	계	
공매물량(A)	4,126	2,473	3,016	525	6,014	10,140
타도낙찰(B)	386	727	642	104	1,473	1,859
B/A(%)	9.4	29.4	21.3	19.8	24.5	18.3

- 대규모 도정업체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자도내에서의 원료곡확보가 어려운 경북·전남·충남지역의 업체가 타도에서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데 반하여, 충북·경남·전북지역의 업체들은 자도내 낙찰위주로 공매에 참여함으로써 타도 낙찰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타도 낙찰순위별 선호지역 :

1순위: 경북(544천석) ⇒ 경남(271천석), 전북(182천석), 기타지역(91천석)

2순위: 전남(434천석) ⇒ 전북(297천석), 경남(98천석), 기타지역(39천석)

3순위: 충남(299천석) ⇒ 전북(202천석), 충북(55천석), 기타지역(42천석)

4순위: 강원(214천석) ⇒ 충북(96천석), 전북(58천석), 기타지역(60천석)

부표 1-15 타도 낙찰물량의 도별 분포

단위 : 천석/조곡 40kg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경 기	/	-	37	45	55	6	3	-	146
강 원	9	/	96	33	58	1	17	-	214
충 북	24	8	/	7	4	2	5	8	58
충 남	37	-	55	/	202	-	4	1	229
전 북	6	3	-	8	/	63	-	24	104
전 남	23	10	-	4	297	/	2	98	434
경 북	22	17	3	19	182	30	/	271	544
경 남	3	2	-	-	27	10	18	/	60
계	124	40	191	116	825	112	49	402	1,859

자. 품종군별 낙찰현황

- '95년산 조곡 공매곡의 전체 낙찰물량(8,698천석) 중에서 품종군별 낙찰비율을 보면 1군품종이 41.3%(3,588천석), 2군품종이 58.7%(5,110천석)로서 2군품종 낙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군별 낙찰물량 점유비를 도별로 보면 1군품종의 경우 경기도가 6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의 55.4%, 충북 47.1%, 강원 46.2%, 충남 45.0%의 순이었으며, 2군품종의 경

부표 1-16 지역(도)별·품종군별 낙찰물량

단위 : 천석/조곡 40kg

구분 도별	전 체					농 협				
	낙찰물량			점유비(%)		낙찰물량			점유비(%)	
	1군	2군	계	1군	2군	1군	2군	계	1군	2군
전 국	3,588	5,110	8,698	41.3	58.7	1,696	2,062	3,758	45.1	54.9
경 기	496	278	774	64.1	35.9	332	164	496	66.9	33.1
강 원	132	154	286	46.2	53.8	92	111	203	45.3	54.7
충 북	256	287	543	47.1	52.9	160	152	312	51.3	48.7
충 남	615	751	1,366	45.0	55.0	285	351	636	44.8	55.2
전 북	378	1,142	1,520	24.9	75.1	176	480	656	26.8	73.2
전 남	1,027	827	1,854	55.4	44.6	434	344	778	55.8	44.2
경 북	271	1,034	1,305	20.8	79.2	84	243	327	25.7	74.3
경 남	413	637	1,050	39.3	60.7	133	217	350	38.0	62.0

우는 경북이 7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북 75.1%, 경남 60.7%, 강원 53.8%의 순이었음.

- '95년산 조곡 공매곡의 전체 낙찰물량(8,698천석) 중 품종군별 낙찰비율을 소속업체별로 보면 농협업체가 낙찰받은 물량(3,758천석)중에서 1군품종 낙찰비율이 45.1%(1,696천석), 2군품종 낙찰비율이 54.9%(2,062천석)인데 반하여, 민간업체가 낙찰받은 물량(4,940천석) 중에서 1군품종 낙찰비율은 38.3%(1,892천석)이었고 2군품종 낙찰비율은 61.7%(3,048천석)로서 농협업체에서 비교적 미질이 양호한 1군품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산 조곡 공매곡의 품종군별 전국평균 낙찰가격은 1군품종이 조곡 40kg 가마당 45,563원이었고 2군품종이 44,419원으로 1군품종이 2군품종보다 1,144원 높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품종군간 낙찰가격차(1,106원)보다 38원이 늘어났음.
- 품종군별 낙찰가격차를 도별로 보면 전북지역이 1,587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데 반하여, 충북지역은 657원으로 가장 적었음.

부표 1-17 '95년산 공매곡의 품종군별·소속업체별 낙찰물량

단위 : 천석/조곡 40kg

구 분		농 협	민 간				합 계
			곡물협회	가공협회	기타	계	
95년산 낙찰물량		3,758	1,977	2,499	464	4,940	8,698
품종 군별	1군품종	1,696	606	1,093	193	1,892	3,588
		(45.1)	(30.7)	(43.7)	(41.6)	(38.3)	(41.3)
	2군품종	2,062	1,371	1,406	271	3,048	5,110
		(54.9)	(69.3)	(56.3)	(58.4)	(61.7)	(58.7)

주: ()내는 구성비임.

○ 특히, 충남·경북·강원지역에서는 2군품종의 낙찰가격이 1군품종 낙찰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역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수해지역의 품종이 1군(충남지역)이었거나 품종군별 재고물량 불균형(강원지역), 1군품종인 '일품벼'의 도정수율 저조로 업체기피(경북지역)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임.

- 2군품종 대비 1군품종의 낙찰가격이 낮게 형성된 지역을 보면 충남지역이 △1,267원으로 가장 큰 가격차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경북지역의 △340원, 강원지역의 △163원 순이었음.

부표 1-18 '95년산(신곡) 공매곡의 도별·품종군별 낙찰가격

단위 : 원/조곡 40kg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전 국
평균가격		48,836	42,612	45,689	44,599	44,544	45,539	43,795	43,292	44,891
품종	1군(A)	49,404	42,524	46,036	43,903	45,736	46,094	43,525	43,960	45,563
군별	2군(B)	47,824	42,687	45,379	45,170	44,149	44,849	43,865	42,859	44,419
가격차(A-B)		1,580	△163	657	△1,267	1,587	1,245	△340	1,101	1,144

차. 공매곡 낙찰물량 규모별 낙찰현황

- '95년산(신곡) 조곡 공매곡의 낙찰물량 규모별 낙찰현황을 보면 업체 수 면에서는 1회 공매물량이 5,000가마(조곡 40kg) 이하인 업체가 50.6%(2,757업체)를 차지하여 영세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찰물량 규모면에서 볼때 5,000~20,000가마 이하인 규모가 65.1%(5,663천석)를 차지하였음.

부표 1-19 '95년산(신곡) 공매곡의 낙찰규모별 낙찰내역

구 분	합 계	5,000 이 하	5,000~ 10,000이하	10,000~ 15,000이하	15,000~ 20,000이하	20,000~ 25,000이하	25,000 이 상
업체수	5,446	2,757	1,553	572	384	63	117
(개소)	(100.0%)	(50.6%)	(28.5%)	(10.5%)	(7.1%)	(1.2%)	(2.1%)
낙찰물량	8,698	1,910	2,619	1,574	1,470	299	826
(천석)	(100.0%)	(22.0%)	(30.1%)	(18.1%)	(16.9%)	(3.4%)	(9.5%)

주: ()내는 구성비임.

부 록 2

1996년도 중 조곡공매 제도 변경내용

1. 주요 변경내용(요약)

구 분	종 전 내 용	변 경 내 용
낙찰자 선정	○ 최고가격 입찰자 부터 낙찰자로 선정	○ 9차공매(6.14)부터 상한가격을 설정하 고, 상한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최 고 입찰한도	○ 무제한	○ 6차공매(4.23)부터 30,000가마/조곡 40kg ○ 7차공매(5.3)부터 20,000가마/조곡 40kg ○ 8차공매(5.23)부터 (대규모) 20,000가마/조곡 40kg (소규모) 5,000가마/조곡 40kg ○ 11차공매(8.2)부터 (대규모) 15,000가마/조곡 40kg (소규모) 5,000가마/조곡 40kg ○ 12차공매(9.6)부터 (대규모) 10,000가마/조곡 40kg (소규모) 3,000가마/조곡 40kg

〈계속〉

구 분	종 전 내 용	변 경 내 용
입찰참가 대 상 지역범위	○ 전국(2개도 이상 복수참여 허용)	○ 전 국(1개도에서만 참여허용) ※ 9차공매(6.14)시부터 적용
계약조건	○ 계약기간: 4일 이내 ○ 대금납부: 6일 이내 ○ 인수도기간: 15일 이내	○ 계약기간: 동일 ○ 대금납부: 동일 ○ 인수도기간: 10일 이내 ※ 9차공매(6.14)시부터 적용
공매참여 자격강화	-	○ 7차공매(5.3)부터 신규 참여업체 및 공 매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공매참여 제한 ○ 9차공매(6.14)부터 지대미시설 보유농 협에 대해 공매참여 배제
공매참여 제한기준 설 정	-	○ 8차공매(5.23)부터 다음사항 위반업체 에 대해 공매참여 제한 또는 배제 - 공매곡 재고과다 보유업체 - 공매곡의 조곡전매 업체 - 출하마진 과다업체 - 원산지 미표시 및 품질 허위표시 업체

2. 공매참여 자격제한 기준

구 분	위 반 회 수 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 공매곡 재고 과다보유 업체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참여 제한
○ 공매곡 조곡 전매업체	참여 배제	-	-
○ 타인에게 등록업체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 등록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참여 배제	-	-
○ 출하마진 과다업체	참여 제한	참여 배제	-
○ 공매받은 조곡의 은닉·보관사실이 적발된 업체	참여 배제	-	-
○ 원산지 및 품질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된 업체	참여 제한	참여 배제	-
○ 인수도 기한내 공매곡 미인수 업체	참여 제한	참여 배제	-
○ 유통단속 기관의 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업체	참여 제한	참여 배제	-
○ 공매곡 관리대장 - 미비치·허위기장 업체 - 불성실 기장 업체	참여 제한 경고	참여 배제 참여 제한	- 참여 배제

《 자격제한 기준의 정의 》

○ 공매곡 재고 과다보유 업체 :

▶ 유통단속 기관의 점검시점 현재 공매곡 총재고물량이 해당업체의 1일평균 판매량의 40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출하마진 과다업체 :

▶ 공매곡 낙찰가격과 출하가격과의 차이가 10,000원/정곡 80kg 이상인 업체

▶ 공매곡 낙찰가격(정곡환산) :

- 조곡 낙찰가격(40kg) ÷ 40 ÷ 0.72(도정수율) × 80

▶ 출하가격(정곡 80kg 기준) :

- 가공 제비용 등 중간비용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도정공장
문전 차상도 가격

○ 조곡전매 업체 :

▶ 낙찰받은 공매곡을 원료곡(조곡) 상태로 타업체에 전매한 업체

부 록 3

가공출하 및 거래단계별 비용 추정자료

단위 : 원 / 정곡 80kg

구			분		세		부		내		역			
공 매 낙 찰 가 격 (조 곡 40 kg)					45,0000	○ 45,000원 낙찰가 기준								
산 지 출 하 비 용 가 격	낙 찰 가 격 (정곡 80kg 환산)㉑				125,000	○ 낙찰가격 ×2÷72%								
	가 공 출 하 비 용	포 장 비				1,080	○ 270원(20kg 지대 실구입가)							
		매 입 제 비 (수송임, 조작비 등)				832	○ 이천M, 철원G, 구미S, 나주 N 조합 실매입비용 평균							
		가	임 금				1,800	○ '95 RPC 조합 결산보고서						
			감 가 상 각 비				1,600	○ "						
			동 력 비				333	○ "						
			기 타 (유류비, 수선비, 화재공제료 등)				835	○ "						
		소 계				4,568								
		운영금리, 판매제비용 등				1,664	○ " (수송비, 조작비포함)							
		가공비용 총계 ㉒				8,144								
	출 하 원 가(㉑+㉒=㉓)				133,144									
	출 하 마 진 ㉑				799	○ '95 RPC 조합 결산보고서 분석자료(㉑×0.6%=㉑)								
	산지 출하가격(㉓+㉑=㉔)				133,943									
(20kg 지대미 환산시)				(33,486)										
도 매 가 격		수수료 및 제조작비 ㉕				2,000	○ 500원/20kg 지대 (공판장, 집배센터 기준)							
		도매가격(㉔+㉕=㉖)				135,943								
		(20kg 지대미 환산시)				33,986								
소 매 가 격		소 매 이 윤 ㉖				6,000	○ 1,500원/20kg 지대							
		소 매 가 격 (㉖+㉕)				141,943								
		(20kg 지대미 환산시)				(35,486)								

부 록 4

공매곡 유통 사후관리

1. 조사목적

- 1996년도 정부의 조곡공매에 참여한 전업체를 대상으로 공매곡의 재고량, 출하마진 및 조곡전매 혐의 등을 조사하여 재고과다 보유업체, 출하마진 과다업체 및 조곡전매 혐의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매참여를 제한 또는 배제시킴으로써 공매과열 현상을 방지하려는데 있음.

2. 조사개요

-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검사소(시·군 출장소)
 - 필요시 행정공무원, 재경원과 합동으로 일제점검 실시
- 조사시기 : 매 공매실시일 10~15일전(3일간)
- 조사대상 : 1996년도에 조곡공매를 받은 전업체
 - (전회차 공매낙찰업체 중점조사)
- 조사내용
 - 공매곡 재고과다 보유 및 조곡전매 여부

- 낙찰물량, 가공물량, 판매물량, 재고물량 및 전력사용 실적 등 확인
- 출하마진 과다 여부
- 공매곡 관련대장 비치 및 기장실태
- 점검표 및 보고서식(별첨)

3. 위반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표 작성요령 (’96년 5차 조사시 적용예)

■ 재고과다 보유업체

- 적발대상 업체 : 조사시점 현재 공매곡 총재고량이 해당업체의 1일평균 판매량의 40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조사방법
 - 공매곡 총재고량
 - 가공후 미판매 정곡(제품)도 조곡으로 환산하여 포함
 - 공매받은 구곡도 포함
 - 1일평균 판매량 : 5, 6, 7월 기간중 공매곡 평균 판매량
(단, 공매유찰에 따른 재고소진으로 1개월 이상 공매곡의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기간은 1일평균 판매량 산정시 제외함)
- 중점조사 사항
 - 민간공매 업체의 재고량 중점추적 조사(의심이 가는 창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확인하여 공매곡 은닉, 공매곡 관련대장 허위기재 여부 조사)
 - 특별관리 업체(지난번 회차 공매시 낙찰업체)의 일일점검 대장과 연계하여 조사

■ 출하마진 과다업체

- 출하기준 가격 : 출하가격과 공매낙찰 가격과의 차이가 10,000원

/80kg정곡 이상인 업체

- 출하가격 : 조사기준일 현재 출하가격(80kg정곡)을 기준으로 하
되, 조사기준일 현재 출하실적이 없을 경우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가공제비용 등 중간비용이 포
함된 가격으로 문전상차도 가격을 기준
- 공매낙찰 가격(80kg정곡) : 조사기준일 현재 공매곡 재고에 대
한 낙찰 평균가격(가중평균)을 적용하되, 재고소진 업체는 최종
재고보유 시점의 낙찰 평균가격(가중평균)을 적용
- 공매낙찰가격 산정방법 : $40\text{kg조곡 낙찰가격} \div 40 \div 0.72 \times 80$
(단, 충남수해지역 <C그룹> 물량에 대해서는 수율 70% 적용)

○ 중점조사 사항

- 조사대상 : 민간 공매업체(출하가격 중점조사)
- 조사방법

〈사전조사〉

- ① 7.18~7.20 조사한 점검표상의 출하가격과 8.20 조사기준
일의 출하가격 등을 대비하여 조사업체의 출하가격 점검
※ 6.14일부터 3차에 걸쳐 공매가격은 계속 하락하였는데 출
하가격을 인상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방문조사시 집
중점검
- ② 필요시 해당업체가 출하한 소비지 양곡상에 대해 전화확인
등을 통하여 출하가격 사전조사

〈해당업체조사〉

- ③ 해당업체의 공매관련 대장 및 금전출납부 등 제장부 확인
- ④ 필요시 인근 타공매업체의 출하가격과 비교
- ⑤ 사전조사한 해당업체 출하가격과 공매대장상의 출하가격을
대조하여 출하마진 과다업체, 관련대장 허위기장업체 조사
 - 6.14 이후 출하가격을 인상한 업체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적정마진을 초과했을 경우 적발

■ 조곡전매 혐의업체

○ 적발대상업체

- 공매관련 대장을 확인하여 7.18~8.20까지 원료벼 사용내역과 정곡출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업체
- 전기사용 실적이 없거나 전력사용 비율이 50% 미만인 업체
〈조곡 40kg 한 가마 가공시 전력소요량 추정 : 약 1kw〉

$$\text{※ 전력사용 비율 산출방법 : } \frac{\text{전력사용량}}{\text{가공물량(조곡 40kg 가마)}} \times 100$$

○ 가공 및 전력사용량 확인

- 가 공 물 량 : 7.18 조사시 재고 + 8.2 낙찰물량 - 8.20 현재 재고
- 전력사용량 : 8.20 조사시 총 전력사용량 - 7.18 조사시 총 전력사용량

■ 기 타

- 공매관련 대장 미비치 및 허위기장 업체(재고량 및 출하가격 허위기장 등)
- 공매관련 대장 부실관리 업체
 - 업체가 보관중인 장부로는 낙찰·가공·판매 및 재고량의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업체
- 공매곡 유통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시·군 출장소)의 조사점 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업체
- 8.2 공매곡 낙찰물량을 인수도 기한(8.19)내에 인수하지 않은 업체

4.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 조사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업체수	위 반 업체수	위반형태별						계
			채고 과다	조곡 전매	출하 마진 과다	지대미 시설 미활용	대장 미비치 등*	기한내 공매곡 미인수	
1차 (5.15~5.16)	967	339	193	67	-	32	47	-	339
2차 (6. 3~6. 5)	963	210	170	10	-	-	23	7	210
3차 (6.25~6.27)	947	171	121	8	33	-	6	3	171
4차 (7.18~7.20)	957	104	73	7	21	-	2	1	104
5차 (8.21~8.23)	960	72	37	6	21	-	2	6	72
계 (비율 : %)	4,794 (100.0)	896 (18.7)	594 (66.3)	98 (10.9)	75 (8.4)	32 (3.6)	80 (8.9)	17 (1.9)	896 (100.0)

* 공매곡 관련대장 미비치, 허위기장, 불성실기장 등

■ 위반업소 조치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공매참여 배 제	차기공매 참여제한	경 고	계
1차	-	339	-	339
2차	10	190	10	210
3차	12	155	4	171
4차	13	91	-	104
5차	10	62	-	72
계 (비율:%)	45 (5.0)	837 (93.4)	14 (1.6)	896 (100.0)

《첨부》①

공매업체별 공매곡유통 점검표(도정업체)

- 업체명 :
 □ 대표자 : (전화번호 :)
 □ 가공능력 : 톤 / 1일

□ 점검내용

○ 공매곡 낙찰 판매 및 총 재고량

월별	낙찰량(A)	판매량(B)	공매곡 총재고(A-B)		농가매입 ·기타재고
			당월	누계	
4월까지 5월 6월 7월 8.20현재	가마/조곡40kg	가마/정곡80kg	가마/조곡40kg	가마/조곡40kg	가마/조곡40kg
계 (1일평균)		()			

○ 95년산 공매곡 출하마진(정곡 80kg 기준)

단위:원

출하가격(A)	평균 낙찰가격(B)	출하마진(A-B)

○ 가공 및 전력사용 실적(7. 18 ~ 8. 20)

가	공	량	전	력	사	용	량
		가마/조곡40kg					kw

- 낙찰물량 미인수 내역 : 물량(가마), 내역()
 ○ 공매관련 대장관리 : 성실기장(), 허위기장(), 불성실기장(), 미비치()

작 성 자 : 직 성명 (인)
 업체대표(관계자) : 성 명 (인)

《첨부》②

보 고 서 식

1. 공매곡 재고과다 보유업체 내역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가공능력	월 평균 판매량	현재고	재고소진 기간
			톤/일	가마/정곡80kg	가마/정곡80kg	일

※ 89년산 및 93년산 구곡은 월평균 판매물량 및 현재고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것.

2. 출하마진 과다업체 내역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출하가격	낙찰가격	출하마진
			원/정곡80kg	원/정곡80kg	원/정곡80kg

3. 조곡전매 혐의업체 내역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가공량	전 력 사용량	전력사용량 비율	사 유 (구체적기재)
			가마/조곡40kg	kw	%	

4. 공매관련대장 미비치, 허위기장, 불성실기장, 조사거부·기피 업체내역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내용(구체적사유 기재)

5. 공매곡 기한내 미인수업체 내역

시·도별	업체명	대표자	낙찰물량	미인수 물량	미인수 내역
○○시 (○○도)			가마/조곡40kg	가마/조곡40kg	

6. 공매업체 재고보유 내역

단위: 가마/조곡40kg

시·도별		원 료 곡 확 보			총판매량	현 재 고		
		공매곡	기타곡	계		공매곡	기타곡	계
○○시 (○○도)	농협 민간							
	계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 농림수산부, 「양곡관리법령집」, 1995. 1.
- , 「식량정책심의관실, 「양정자료」, 1996. 9.
- 농협중앙회, 「'96년 조곡공매결과 분석자료」, 1996. 12.
- , 「'95 농협 조곡공매사업 결과」, 1995. 12.
- , 「'95년도 미곡업무 실무교재」, 1995.
- , 「양정개혁방안 조기정착을 위한 '94 농협 조곡공매사업 평가세미나」 발표자료, 1994. 12.
- , 「'92년산 농협수매 일반벼 조곡 공매결과 종합보고서」, 1993. 12.
- 한국농어민신문, 「물벼 산물수매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1996.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구상」 토론회 결과보고, 연구자료 D121, 1996. 7.
- , 「쌀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1997. 3.

[일본자료]

- 日本 自主流通米價格形成機構, 「自主米機構年報」, 平成 5年.
- , 「自主流通米價格形成センター關係規定集」, 平成 7年 11月.

정책연구보고 P21
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찍은날 1997. 5. 펴낸날 1997. 5.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1310 - 7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